

제226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 
제2차 본 회의 (2017.6.26.)

# 조례안 심사 보고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**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**심 사 보 고 서**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17. 5. 31.

나. 발 의 자: 박희순·김종두·표주숙·변상원·이흥희·강철우·최광열·  
형남현·이성복·권재경·김향란 의원(11명)

다. 회부일자: 2017. 6. 8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6. 22.

## 2. 개정이유

-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조항 등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“직무”의 구체적 인정범위 근거 규정(안 제3조제2항)

나. 보상심의회의 서면심의 조항 신설(안 제13조제1항)

다. 보상심의회 위원의 제척, 기피, 회피 사항 신설(안 제13조의2)

라.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조항 정비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조항 등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일반적인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# 6. 토론요지: 해당 없음

#### 7. 수정안 요지: 해당 없음

##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##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 없음

##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 없음

**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**심 사 보 고 서**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17. 5. 31.

나. 발 의 자: 박희순·김종두·표주숙·변상원·이홍희·강철우·최광열·  
형남현·이성복·권재경·김향란 의원(11명)

다. 회부일자: 2017. 6. 8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6. 22.

### 2. 개정이유

-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감사·조사의 대상기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(안 제5조제1항제6호)
- 현행: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
  - 개정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·조사의 대상기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일반적인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# 6. 토론요지: 해당 없음

#### 7. 수정안 요지: 해당 없음

##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##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 없음

##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 없음